#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483

발의연월일: 2024. 12. 13.

발 의 자:전진숙·김 윤·박희승

박용갑・박해철・임광현

이인영 · 안호영 · 황정아

오세희 · 문금주 · 권칠승

의원(12인)

## 제안이유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된 사례에서 보듯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의도적으로 직무를 거부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하여 국회의 원들이 고의적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 법체계에서는 국회의원이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헌법질서 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국민이 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국민주권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이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질 서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이 직접 해당 국회의원을 그 직에서 해임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의민주주의 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통제 와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회의원이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한 경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따른 민주화운동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경우, 탄핵소추, 내란 및 외환의 죄에 관한 사항 등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안건을 폐기시킬 고의의 목적으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경우 소환될 수 있도록 하되, 임기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거나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소환투표의 청구 대상이되지 아니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국민소환투표권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국민소환투표인의 연령은 국민소환투표일을 기준으로 계산함(안 제5조).

- 라.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 구에 있는 국민소환투표인이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전체 국민소환투표권자 중 지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균등하게 선정된 국민소환투표인이 하되, 그 수는 국민소환투표권 자 총수를 지역구국회의원정수로 나는 수로 하도록 함(안 제5조).
- 마. 국민소환투표인명부는 시·군·구의 장이 작성하도록 하고, 투표 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6조).
- 바.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국민소환투표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국회의원의 국민소환투표사무는 해당 시·군·구선거관리위 원회가 관리하도록 함(제8조제1항).
- 사.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구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로 나눈수에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으로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하여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받은 서명의수가 소환에 필요한 서명 총수의 5분의 1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고 초과되는 부분은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안 제9조제2항).

- 아.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국민소환투 표청구권자는 소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등만이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명요청 활동기간은 소환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20일 동안으로 하며, 활동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합(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자.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심사하여 국민소환투표 청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하고, 적법한경우에는 그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와 국민소환투표대상자 및 국회의장에게 통지하며, 국민소환투표일과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여 발의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차. 국민소환투표일은 국민소환투표안의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함(안 제19조).
- 카.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로 함(안 제25조제1항).
- 타. 국민소환투표대상자는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국민소환 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그 정지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른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9조).
- 파.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함(안 제30조제1항).

- 하. 국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국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 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며, 그로 인한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음(안 제31조).
- 거. 국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국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해당 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은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국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3 0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 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국민소환"이란 국민이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직접 해임하는 것을 말한다.
  - 2. "국민소환투표"란 국민소환을 하기 위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행하여지는 투표를 말한다.
  - 3. "국민소환투표인"이란 국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소 환투표인명부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4. "국민소환투표대상자"란 이 법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의 대상이 된지역구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말한다.
  - 5. "국민소환투표운동"이란 국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국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

다.

- 가. 국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 나. 국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한 준비행위
- 6. "관할선거관리위원회"란 국민소환투표사무를 관리하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또는 해당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소환사유) 국민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환할 수 있다.
  - 1.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3.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따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 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경우
  - 4. 탄핵소추, 내란 및 외환의 죄에 관한 사항 등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안건을 폐기시킬 고의의 목적으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경우
- 제4조(국민소환투표의 청구 제한 등) ① 국회의원은 임기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소환투표의 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② 국회의원은 임기 중 동일한 사유로 거듭하여 국민소환투표의 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제5조(국민소환투표권자 등)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민소환투표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권은 국민소환투표 인명부 작성기준일(제16조에 따른 국민소환투표 발의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인정된다.
  - ② 국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국민소환투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③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 구의 국민소환투표인이 한다.
  - ④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모든 국민소환투표권자 가운데 지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균등하게 선정된 국민소환투표인(이하 "비례대표국민소환투표인"이라 한다. 이하 후단에서 같다)이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민소환투표인의 수는 국민소환투표권자총수를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로 나는 수로 하되, 선정 방법 및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의2(투표권이 없는 자) ① 투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권이 없다.
  -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 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제6조(국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①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시·군·구의 장(「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은 국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국민소환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국민소환투표인명부에 등재될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국민소환투표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 기간 중에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확정과 제2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의 대상·절차,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소환투표대상자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 및 구성원이 「공직선거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소환투표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 개시일 다음날까지하여야 한다.
- 제7조(국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국민소환투표 홍보·계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소환투표권자가 국민소환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국민소환투표 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 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하에 문서·도화·시설물·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국민소환투표의 참여·투표 방법, 그 밖에 국민 소환투표에 필요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국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 ① 국민소환투표사무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 ② 국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3 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는 "국민소환 투표"로, "선거관리"는 "국민소환투표관리"로, "선거사무" 및 "선거 구선거사무"는 각각 "국민소환투표사무"로 본다.

#### 제2장 국민소환투표의 실시 청구 등

- 제9조(국민소환투표의 청구) ①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사람(이하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과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 1. 지역구국회의원: 해당 지역구의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에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를 곱한 수 이상
  - 비례대표국회의원: 모든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지역구국 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에 직전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

원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를 곱한 수 이상

- ② 제1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하여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받은 서명의 수가 소환에 필요한 서명 총수의 5분의 1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부분은 계산에 산입하지아니한다.
- ③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총수는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관할선 거관리위원회에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한 날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3항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 의 총수를 각각 공표하여야 한다.
- 제10조(소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신고) ① 2명 이상의 국민소환투표 청구권자는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소환 추진위원회(이하 "소환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 자 및 구성원(이하 "대표자등"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 1. 국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사람
  - 2.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3. 국민소환투표대상자가 지역구국회의원인 경우 그 선거구에서 후 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하 "입후보예정자"라 한다), 입후보예

정자의 가족(배우자,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입후보예정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 다) 및 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

- 4. 국민소환투표대상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인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해당 국회의원보다 후순위에 올라있는 사람(이하 "후순위후보자"라 한다), 후순위후보자의 가족(배우자, 후순위후보자 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순위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및 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
- ② 소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등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이하 "인 적사항"이라 한다)
- 2. 국민소환투표대상자
- 3. 국민소환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한 후 소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④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

다는 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대표자등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대표자등의 추가 · 변경을 신고한때에도 또한 같다.

- ⑤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등이 추가·변경되었을 때에는 그때마다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소환발의 서명요청 활동) ① 소환추진위원회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20일 동안(이하 "서명요청 활동기간"이라 한다) 소환발의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 활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은 국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가 기재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한 국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이하 "소환청구인서명부"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등이 서명요청 활동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증표를 제시하거나 패용하여야 한다.
  - ④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사람이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환청구인서명부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기전에 철회하여야 하며,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즉시 소환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 제12조(서명요청 활동의 제한) ①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등은 해당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 에 따른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 ②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대표자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서명을 요청할 수 없으며, 검인되지 아니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받을 수 없다.
- ④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시설물,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다.
- 1.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국민소환투표의 취지나이유를 설명하는 행위
- 2.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서명을 호소하는 행위
- 3. 서명요청을 위하여 해당 국민소환투표대상자의 선거구의 읍・면・동(비례대표국회의원인 경우에는 시・군・구를 말한다)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4.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상의)・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서명요청을 하는 행위
- 5.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

하여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서명을 요청하는 행위. 이 경우 자동차 를 이용할 수 없다.

- 6.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 페이지에 서명요청을 위한 광고를 하는 행위
- 제13조(소환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서명요 청 활동을 종료한 때에는 소환청구인서명부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요청 활동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 일이 경과하면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할 수 없다.
- 제14조(소환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민투표소환 청구 사실을 공표하고, 소환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소환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 1.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 3.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등이 아닌 사람의 요청에 따라 행하여진 서명
  - 4.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 5.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명요청 활동기간 외의 기간에 행하여 진 서명
-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명요청 활동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 7. 강요 ·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진 서명
- 8.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반 되는 서명
- ③ 소환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공람기간 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 1항에 따른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과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 청구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 하여금 30일 이내에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에 대한 절차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국민소환투표 청구의 각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추진위 원회의 대표자가 제출한 국민소환투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선거 관리위원회는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 를 공표하여야 한다.
  - 1. 제4조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의 청구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13조 단서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여 소환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경우
  - 3. 제14조제6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 4.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14조제6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 제3장 국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제16조(국민소환투표의 발의)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와 국민소환투표대 상자 및 국회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국민소환투표 대상자에 대하여 국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7조제 2항에 따른 소명요지와 소명서의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 내에 국민소환투표일과 국민소환투표안(소환청구서 요지를 포함한 다)을 공고하여 국민소환투표를 발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일과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는 때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명요지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소명기회의 보장)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의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 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소명요청을 받은 국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요지와 소명서(필요한 자료를 기재한 소명자료를 포함한다)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명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8조(국민소환투표절차의 종료) ① 국회의원이 사망하거나 사직·퇴직하거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절차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9조(국민소환투표일) 국민소환투표일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제20조(국민소환투표의 형식) 국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한다.
- 제21조(국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 ①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투표는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의 지역구를 대상으로 한다.
  -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 제22조(국민소환투표의 방법 등) ① 국민소환투표는 「공직선거법」 제159조에 따른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 ② 국민소환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 ③ 국민소환투표 및 개표 사무의 관리는 전산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화에 의한 투표 및 개표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④ 국민소환투표를 하는 때에는 투표인의 성명 등 투표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국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 투표안의 내용, 국민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 및 국민소환투표의 절차 등을 게재한 국민소환투표공보를 1회 이상 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공보의 규격·작성방법·배부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24조(투표・개표절차 등의 준용) 투표시간, 투표용지, 투표구・개표

구의 설치, 투표·개표의 절차 및 참관 등 투표·개표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0장(투표) 및 제11장(개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에 관하여는 거소투표의 예에 따르고, 국민소환투표의 투표시간은 보궐선거등의 투표시간을 준용한다.

#### 제4장 국민소환투표운동

- 제25조(국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 및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① 국민소환투표운동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이하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이라 하다)할 수 있다.
  - ②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소환투 표운동을 할 수 없다.
- 제26조(국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국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에 관하여는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에 한정하여 「공직선거법」 제61조·제69조·제79조·제82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및 제8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기간"은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으로, "후보자"는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 및 국민소환투표대상자"로, "선거"는 "국민소환투표"로, "정당추천후보자"는 "국민소환투표대상자"로, "선거"는 "국민소환투표"로, "정당추천후보자"는 "국민소환투표대상자"로, "선거"는 "국민소환투표"로, "정당추천후보자"는 "국민소환투표대상자"로,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과 "음악 또는 선거

운동에 관한 내용"은 "국민소환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다.

- 제27조(국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제26조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신문광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제23조에 따라 관할선거관리 위원회가 주관하는 국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배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의 국민소환투표운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 「공직선거법」 제80조에 따른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 2. 「공직선거법」 제82조의5를 위반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3. 「공직선거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제 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4. 「공직선거법」 제102조를 위반하여 야간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 5. 「공직선거법」 제106조를 위반하여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 ③ 공무원 등 지위를 이용한 국민소환투표운동의 금지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은 "국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본다.
- 제28조(위법한 국민소환투표운동에 대한 중지·경고 등) 관할선거관리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이 법 및 이 법의 위임에 따른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투표의 공정을 현저히 해치 는 것이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 제5장 국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소송 등

- 제29조(권한행사의 정지 등) ① 국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선거관리위 원회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제30 조제3항에 따라 국민소환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국회의원은 그 정지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른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 제30조(국민소환투표 결과의 확정) ①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 ② 전체 국민소환투표자의 수가 국민소환투표인수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 ③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투표의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 국민소환투표 대상자 및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개표를 하

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1조(국민소환투표의 효력)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국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 제32조(국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송) ① 국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이의가 있는 국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해당 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은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제30조제3항에 따라 국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있다.
  - ② 국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222조부터 제229조까지의 규 정 중 국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3조(보궐선거 실시의 제한 등) ① 제32조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송의 결과 국민소환투표의 무효가 결정되어 재투표가 실시 되는 때에는 그 결과가 확정된 후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재투표 및 보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13장(재선거와 보궐선거) 중 국회의원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4조(국민소환투표의 비용 부담) ① 국민소환투표의 사무에 필요한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 및 국민소환투표대상자가 국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하여 지출한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1. 국민소환투표의 준비 · 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
  - 2. 국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 토론회 등의 개최 및 불법 국민소환투 표운동의 단속에 필요한 경비
  - 3. 국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송과 관련된 경비
  - 4. 국민소환투표 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 그 밖에 국민소환투표사 무의 관리를 위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 한 경비
  - ② 국가는 예비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국민소환투표안 발의일부터 5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 비용의 산출기준·납부절차·납부방법·집행·회계 및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6장 벌칙

제35조(벌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1

항을 위반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국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국민소환투표 인(국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국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오 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물품 ・차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 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 2. 국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의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 또는 청년단체·부녀단체·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 3. 국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 향우회·계모임, 그 밖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 또는 알선한 사람
  - 5. 국민소환투표인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소환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

- 6.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민소환투표함을 열거나 그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 또는 투표함 안의 국민소환투표지를 제거・변 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사람
- 7. 국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 포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
- 8. 국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국민소환투표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한 사람
- 9. 국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사람으로서 그 직권을 남용 하여 국민소환투표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에 관한 직 무를 유기한 사람
-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 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
  - 2. 성명의 사칭, 신분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국민소환투표를 하거나 하려고 한 사람
  -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오르

게 한 사람

- 4. 국민소환투표에 관한 서명요청 활동 및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그 밖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한 자
- ②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사람
  - 2. 제2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정보를 전송한 사람
-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2조를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한 사람
  -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을 위반하여 국민소 환투표운동을 한 사람
  - 3. 제2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사람

- ②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공직선거법」 제61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기구를 설치한 사람
- 2.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사람
- 3. 「공직선거법」 제79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공개장 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한 사람
- 4.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 제40조(이익의 몰수 등) 제3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정한다.
- 제41조(과태료) ①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른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에 따른 동행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고ㆍ제

출의 의무를 해태한 사람

- 2. 학교·관공서, 그 밖의 공공기관·단체의 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 회의 투표소·개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협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
- 3.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붙인 국민소환투표용지 모형을 훼손하거나 더럽혀 손상시킨 사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패용하지 않고 서명요청 활동을 한 사람
- 2. 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거나 해태한 사람
- 3.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제6항을 위반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기구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 또는 게시한 사람
- 4.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을 위반하여 표 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대담을 한 사람
- 5.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 제7장 보칙

- 제42조(공정국민소환투표지원단 및 사이버공정국민소환투표지원단)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민소환투표 보 부정을 감시하고 공정국민소환투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명요청 활동기간 개시일부터 국민소환투표일까지 해당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공정국민소환투표지원단을 둔다.
  - 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국민소환투표 부정을 감시하고 공정국민소환투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 사이버공정국민소환투표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정국민소환투표지원단 및 사이버공정 국민소환투표지원단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10조의2제2항 본문,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 조의3(제2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은 "공정국민소환투표지원단"으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사이버 공정국민소환투표지원단"으로, "선거운동"은 "국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본다.
- 제43조(국민소환투표 범죄의 조사 등)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에 따라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를 준용한다.

제44조(국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죄 및 제41조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제45조(국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관할선거관리위 원회는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죄 및 제41조의 과태료에 해당하 는 위법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사람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